

1.약관명: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(한국주택금융공사\_채권유동

화목적\_포함)

2.시행일: 2024.10.17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## 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 1 조 거래조건</p> <p>지연배상금(연체이자)를</p> <p>(기본약관 제 3 조제 5 항 선택)</p> <p>. 연체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(예정)액에 대해 이자율 + 연 4%,</p> <p>. 연체기간이 3 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(예정)액에 대해 이자율 + 연 5%,</p> <p>.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 개월 이내는 이자율 + 연 4%, 3 개월 초과는 이자율 + 연 5%를 적용합니다.</p>	<p>제 1 조 거래조건</p> <p>지연배상금(연체이자)를</p> <p>(기본약관 제 3 조제 5 항 선택)</p> <p>. 연체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(예정)액에 대해 이자율 + 연 4%,</p> <p>. 연체기간이 3 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(예정)액에 대해 이자율 + 연 5%,</p> <p>.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 개월 이내는 이자율 + 연 4%, 3 개월 초과는 이자율 + 연 5%를 적용합니다.</p> <p>다만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개인채무자보호법”)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</p>	<p>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</p>

	<p>부과를 하지 않습니다.(단,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.)</p> <p>. 다만,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률이 연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%를 적용합니다.</p>	
--	--	--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제 2 조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</b></p> <p>①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을 납입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기본약관 제 7 조 또는 이 약정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, 즉시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을 납입하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 2 조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</b></p> <p>①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을 납입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기본약관 제 7 조 또는 이 약정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, 즉시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을 납입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③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7 조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기로 합니다.(단,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)</p>	<p>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						
<p><b>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b>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(공사)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(공사)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(공사)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 6 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</li> <li>2. 제 6 조제 5 항, 제 6 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3.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한날로부터 1 년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4.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실행 후 1 년 이내 해당 입양아를 파양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 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9 1211 719 1288"> <tr> <td>상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</td> <td>본인</td> <td>(인)</td> </tr> </table>	상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본인	(인)	<p><b>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b>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(공사)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(공사)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(공사)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. <b>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6 조를 적용합니다.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 6 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</li> <li>2. 제 6 조제 5 항, 제 6 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3.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한날로부터 1 년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4.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실행 후 1 년 이내 해당 입양아를 파양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 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51 1413 1294 1489"> <tr> <td>상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</td> <td>본인</td> <td>(인)</td> </tr> </table>	상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본인	(인)	<p>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</p>
상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본인	(인)						
상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본인	(인)						